

인천지방법원 2021. 10. 19 선고 2021가단1194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19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. 5. 13. 접수 제479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강태호

별지